

의안번호	2212384
의 퇴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5.9.19.
추계번호	25D458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4억 1,500만원, 2031년 28억 3,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0억 9,900만원(연평균 26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진료지원(안 제33조)	2,293	2,389	2,489	2,596	2,709	12,476	-
수송시설 지원(안 제73조)	122	123	124	126	127	622	-
합계	2,415	2,512	2,614	2,722	2,836	13,099	2,62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진료)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함(제1항)	의무규정
2		특수임무공로자가 국가의 의료기관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10%)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3		보훈병원의 감면(60%) 진료 대상에서 “특수임무공로자”를 삭제함(제5항제1호) → 제3항에 따라 전액 국비의료지원 대상이 됨	의무규정
4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를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3조(진료)	0	—
2		0	—
3		0	—
4	제73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특수임무부상자(7급)의 비상이처 국비진료 지원(제33조제4항), 특수임무공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비진료지원(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과 수송시설지원(제73조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인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는 연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2]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부상자 7급, 특수임무공로자) 현황: 2018~2024년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감률
특수임무부상자(7급)	39	42	43	48	52	64	81	12.95%
특수임무공로자	1,420	1,401	1,394	1,384	1,360	1,344	1,326	△1.14%

자료: 국가보훈부

[표 3] 특수임무유공자(특수임무부상자 7급, 특수임무공로자) 인원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구분	2024	2027	2028	2029	2030	2031
특수임무부상자(7급)	81	117	132	149	168	190
특수임무공로자	1,326	1,281	1,267	1,252	1,238	1,224

주: 2024년 특수임무유공자 인원을 기준으로 연평균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본 추계에서 진료지원(보훈병원·위탁병원) 단가는 2024년 기준 단가에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증감률을 적용하고, 수진횟수는 2024년 기준 수진횟수(보훈병원 9.9회, 위탁병원 11.7회)를 적용하여 추정함

[표 4] 진료지원 단가와 수진횟수 현황: 2020~2024년

(단위: 원, 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증감률
보훈병원	국비진료	진료단가	102,089	107,592	112,573	123,292	130,381	6.31%
		수진횟수	10.7	10.5	9.9	10.2	9.9	-
	감면진료(60%)	진료단가	62,974	64,394	66,795	67,249	74,035	4.13%
위탁병원	국비진료	진료단가	74,100	79,868	82,691	81,954	82,619	2.76%
		수진횟수	11.4	10.5	10.2	11.2	11.7	-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5] 진료지원 단가와 수진횟수 추정: 2027~2031년

(단위: 원, 회)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보훈병원	국비진료	진료단가	156,636	166,514	177,014	188,177	200,044
		수진횟수	9.9	9.9	9.9	9.9	9.9
	감면진료(60%)	진료단가	83,588	87,039	90,632	94,374	98,270
	국비·감면진료 단가차액		73,048	79,475	86,382	93,804	101,775
위탁병원	국비진료	진료단가	89,645	92,117	94,658	97,269	99,951
		수진횟수	11.7	11.7	11.7	11.7	11.7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수송지원 단가는 2024년 기준 단가(90,100원, 10,729백만원/119,080명)에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여 추정함

[표 6] 수송시설 이용지원 단가 추정: 2027~2031년

(단위: 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수송시설 이용지원	95,520	97,431	99,379	101,367	103,394

자료: 국가보훈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 소비자물가상승률(2025. 3.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심사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훈병원 진료지원(안 제33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제1호)

- 보훈병원 진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특수임무부상자의 본인부담금(진료비 10%) 감면과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지원 확대(60%→100%)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안 제33조제4항²⁾은 비상이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특수임무부상자를 삭제함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도 국비 진료지원 대상임
 - － 현행법 제33조제4항³⁾에서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에 대해서 진료비의 일부(1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3조제1항⁴⁾에서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모두 상이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진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3항에서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모두 국비진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현행법 제33조제5항⁵⁾에서 특수임무공로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진료(60%)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
- 2) 제33조(진료) ④ 특수임무공로자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3) 제33조(진료)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4) 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제33조(진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지급한다.
 1.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후단 생략>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7] 보훈병원 진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본인부담금 감면 (특수임무부상자)	인원(A, 명)	117	132	149	168	190	
	수진횟수(B, 회)	9.9	9.9	9.9	9.9	9.9	
	국비진료단가(C, 원)	156,636	166,514	177,014	188,177	200,044	
	비상이처 진료율(D)	73.6%	73.6%	73.6%	73.6%	73.6%	
	본인부담 비율(E)	10%	10%	10%	10%	10%	
	소계 (F=A×B×C×D×E)	13	16	19	23	28	99
진료지원 확대 (특수임무공로자)	인원(G, 명)	1,281	1,267	1,252	1,238	1,224	—
	수진횟수(H, 회)	9.9	9.9	9.9	9.9	9.9	—
	진료단가 차액(I, 원)	73,048	79,475	86,382	93,804	101,775	—
	소계 (J=G×H×I)	927	997	1,071	1,150	1,233	5,378
추가재정소요(K=F+J)		940	1,013	1,090	1,173	1,261	5,477

주 1. 비상이처 진료율은 최근 3년(2021~2023년) 비상이처 진료율의 평균값⁶⁾임

2. 본인부담 비율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본인부담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위탁병원 진료지원(안 제33조제1항·제4항, 현행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 위탁병원 진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특수임무부상자의 본인부담금(진료비 10%) 감면과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지원 확대(0%→100%)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안 제33조제4항⁷⁾은 비상이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특수임무부상자를 삭제함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도 국비 진료지원 대상임

6) 진료지원대상자 비상이처 진료율: 2021~2023년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비상이처 진료율	71.2%	75.6%	74.0%	73.6%

자료: 국가보훈부

7) 제33조(진료) ④ 특수임무공로자가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현행법 제33조제4항⁸⁾에서 특수임무부상자의 비상이처 진료에 대해서 진료비의 일부(10%)를 본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3조제1항⁹⁾에서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 모두 상이처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진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3항에서는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모두 국비진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특수임무공로자의 진료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위탁병원 진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8] 위탁병원 진료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본인부담금 감면 (특수임무부상자)	인원(A, 명)	117	132	149	168	190	
	수진횟수(B, 회)	11.7	11.7	11.7	11.7	11.7	
	국비진료단가(C, 원)	89,645	92,117	94,658	97,269	99,951	
	비상이처 진료율(D)	73.6%	73.6%	73.6%	73.6%	73.6%	
	본인부담 비율(E)	10%	10%	10%	10%	10%	
	소계 (F=A×B×C×D×E)	9	10	12	14	16	61
진료지원 확대 (특수임무공로자)	인원(G, 명)	1,281	1,267	1,252	1,238	1,224	-
	수진횟수(H, 회)	11.7	11.7	11.7	11.7	11.7	-
	국비진료단가(I, 원)	89,645	92,117	94,658	97,269	99,951	-
	소계 (J=G×H×I)	1,344	1,365	1,387	1,409	1,432	6,937
추가재정소요(K=F+J)		1,353	1,376	1,399	1,423	1,448	6,999

주 1. 비상이처 진료율은 최근 3년(2021~2023년) 비상이처 진료율의 평균값¹⁰⁾임

2. 본인부담 비율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본인부담율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8) 제33조(진료) ④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부상 외의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9) 제33조(진료) ① 특수임무부상자와 특수임무공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진료지원대상자 비상이처 진료율: 2021~2023년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비상이처 진료율	71.2%	75.6%	74.0%	73.6%

자료: 국가보훈부

다. 수송시설 이용지원(안 제73조제1항)

-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추가되는 특수임무공로자 인원에 연도별 수송시설 이용지원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9] 수송시설 이용지원의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특수임무공로자 인원(A)	1,281	1,267	1,252	1,238	1,224	—
수송시설 이용지원 단가(B 원)	95,520	97,431	99,379	101,367	103,394	—
추가재정소요(C=A×B)	122	123	124	126	127	62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수송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4억 1,500만원, 2031년 28억 3,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0억 9,900만원(연평균 26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진료지원 (안 제73조)	보훈병원	940	1,013	1,090	1,173	1,261	5,477	—
	위탁병원	1,353	1,376	1,399	1,423	1,448	6,999	—
	소계	2,293	2,389	2,489	2,596	2,709	12,476	—
수송시설 지원(안 제73조)		122	123	124	126	127	622	—
합계		2,415	2,512	2,614	2,722	2,836	13,099	2,620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특수임무공로자, 진료지원 단가, 수진횟수의 연평균증감률 등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